

## 학생회관 관리 규정

제정 1997. 07. 02.

폐지 2024. 11. 4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의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며 면학풍토를 조성시킬 목적으로 학생회관(이하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주관)** 학생회관의 운영관리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총괄하며, 그 업무는 학생취업지원처의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9.06.25., 2022.04.20)

**제3조(심의)** 학생회관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함에 있어서 또한 학생취업지원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**제4조(시설·비품의 배치 및 관리)** ①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종류와 비품의 배치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정한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② 회관내의 모든 시설과 비품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거나, 다른 장소로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**제5조(개관시간)** 회관은 공휴일과 휴업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 시간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따로 정한다. 또한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개관 또는 폐관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**제6조(사용)** ①회관 내 모든 시설은 개관시간 중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.

② 학생 단체실 등 회관의 일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폐관시간 이후 연장하여 회관의 일부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게시물)** 회관내·외의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하고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준칙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금지사항)** 회관내의 질서유지 및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한다. 다만,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1.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판매 행위
2. 허가되지 않은 문서 기타 등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
3.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또는 집단행위
4. 앰프 및 각종음향기를 이용하여 고성방가 하는 행위
5. 기타 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

**제9조(물품 망실,분실 등에 대한 배상 책임)** 회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시에는 물품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

**제10조(사용 중지 및 사용제한)** ①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회관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② 교직원 또는 재학생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외부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**제 11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199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355, 2024.11.04.)

이 규정은 2024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.